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

－ 「문화재보호법」 과 관련 법안 검토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분석－

고 영 자

(제주기록문화연구소/하간)

들어가며

과학기술경쟁력 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현대인은 사고(思考)의 규격화, 체계화, 세계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기술매체의 발전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개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선함, 파괴력, 실용성, 효율성, 완성도가 높은 ‘신상들’은 우리시대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고 문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무형문화재’라 하면 고리타분하고 비실용적인 오랜 유물로 현대인의 의식에서 멀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쩌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러한 이해이야말로 과학기술시대의 가치에 경도되거나 오염된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를 말하면서도 정작 이에 다가가는 태도는 마치 예술작품을 대하듯 그것의 창의성, 고유성, 심미적 완성도, 진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문화재’를 정의하기 전에 각자 ‘무형문화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을 비롯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UNESCO가 관장하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등재」(2006년) 등과 같은 대표적인 관련 제도와 법률만 보더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접근과 인식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수많은 논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합일점을 이루는 지점이 있다. 무릇 ‘무형문화재’란 고유성(원형성)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유성 이전에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들, 즉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 구전 표현, 전통 놀이와 의례 속에 담긴 지혜와 역동성이 잠재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UNESCO가 표방하는 것처럼(2006년), 이것은 궁극적으로 문화 간 대화를 끌어내는 매체가 되고, 또 전 세계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소재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점검하고 논의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이 연장선에서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 관련 시론(試論)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2가지 논점 즉, ①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법안 검토와 더불어 ② 제주도 무형문화재 현황과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I.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법안 검토

1.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되고 무형문화유산 정의의 확대와 함께 분야도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해 2015년 3월 4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각종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맞추어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을 원칙으로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전수교육 방안을 개선하고, 무형문화재의 브랜드화,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중 대표적인 조항을 보자.

1)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2015년 개정 이전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제조 등 8개 분야로 그 분야가 협소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도 문화재로 지정 가능

2015년 이전 「문화재보호법」 제24조 2항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5년 「문화재보호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새롭게 개정된 법은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기존 무형문화재 제도에 적용되던 기본원칙 중 ‘인적전승주의’의 원칙을 깨고, ‘종목중심주의’로 전환하여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법이 개정된 이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종목이 다름 아닌 <씨름>(2017.1.4. 지정)이다. <씨름> 종목 문화재 분류는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로 되어있다. 제주도 또한 2015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덕분에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2017.5.1.)되는 영광을 안았다. <해녀> 종목 문화재 분류는 ‘무형문화재/전통 지식/생산지식’로 되어있다. 2015년 「문화재보호법」 힘 입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이 제주도 <해녀> 일반이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개정판 「문화재보호법」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현재는 전승되지만, 보유자가 고령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를 물려받을 전수조교나 전수체계가 부재할 경우, 제빠르게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다면 기·예능 종목 무형문화재는 바로 해체위기에 놓일 것이란 점이다. 물론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이 해체위기에 놓인 모든 종목이 자동적으로 보호받거나, 현상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종목 하나하나가 고유성과 보편성을 떨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과 보존의지가 중요하다.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주목 항목

1) 제정일: 2015년 3월 4일

2) 제정 목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유네스코 협약이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조사 및 기록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주목하고 숙지할 관련 조항들이 많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실천, 적용 가능성, 의지 여부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반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제주도 무형문화재 현황 분석

1. 2019년 국가·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1) 개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별 종목 (총 27종목)

<표 1>¹⁾

구 분	계	개별종목	보유단체
국가 지정	5종목	《3종목》 갓일(1985), 망건장(1987), 탕건장(1980)	《2종목》 제주칠머리당영등굿(1980), 제주민요(1989)
도지정	22종목	《18종목》 해녀노래, 영감놀이, 오메기술, 불미공예, 정 동별립장, 방앗돌굴리는노래, 멸치후리는 노 래, 고소리술, 고분양태, 제주큰굿, 제주도 웅기장, 제주불교의식, 제주농요, 진사대소 리, 제주시 창민요, 삼달리어업요, 제주도 영장소리, 구덕장	《4종목》 송당마을제, 납읍리마을제, 성읍 리 초가장,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1) 현재 국가지정 제주도 중요무형문화재인 경우는 1980년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71호)와 <탄건장>(제67호)을 필두로 1989년 지정된 <제주민요>까지 총 5종목이다. 그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제주도 소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1건도 없다. 다만, 2015년에 제주도가 도 지정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을 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여년 지난 최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검토 결과 ‘보류’로 판정받은 바 있다. ‘보류’ 사유를 반드시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재신청 여부나 신청 추진 주체 등 눈여겨볼 사안이다.

(2)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경우는 2013년 10월 지정된 <삼달리어업요>가 지정된 이래 20종목을 유지하다가, 4년 만인 2017년 8월에 <제주도영장소리> 2건, 2019년 4월에 <구덕장>이 추가 지정되어 2019년 현재 제주도 무형문화재는 총 22종목이 되었다. 각 종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3) 제주도의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가 2019년 현재 총 27종목이라는 수치는 많다면 많

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제공.

고 적다면 적다. 반대로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무형문화재가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정신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전승환경이나 보유자 및 전승자 부재, 팀원 간 갈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것도 있다.

2) 2019년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표 2>2)

()는 2018년, 단독 표시는 전년과 동일

구 분	계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계	91 (89)	6	21 (18)	19 (20)	39	6
국가지정	19	2	5	4	6	2
도 지 정	72 (70)	4	16 (13)	15 (16)	33	4

※ 2종목 명예보유자 : 김을정(성읍) / 고소리술·오메기술

(1)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승자 현황은 최근에 변동이 없고, 도 지정의 경우는 2019년에 보유자가 3명(고분양태, 구덕장, 옹기장) 늘고, 전수교육조교가 보유자가 되면서(제주도옹기장 고달순) 1명 감소, 전승자가 총 2명 증가했다.

(2) 국가지정 문화재 중 최근 변화는 2017년 4월 <제주민요>(제95호)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한 점이다. 따라서 현재는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가 <제주민요>의 전승주체가 되고 있다. <제주민요>는 표선면 성읍1리 전승 민요로 1989년에 지정(보유자:조을선) 되었으나, 조을선(2000년 작고)과 전수교육조교 이선옥(2006년 작고)이 작고하였다. 그 후 전수교육조교 강문희가 전승활동을 하다가 2017년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례다. 이로써 제주소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종목 중 2종목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와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가 보유단체 자격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3)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제공.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아울러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를 시행하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보다 3년 빠른 2002년 명예보유자 제도가 신설되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2001년 9월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제주도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도입되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위원회가 정한 명예보유자는 모두 4종목 3명에 해당한다.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2종목 보유자 김을정, 제주도옹기장 신창현, 덕수리불미공예 윤문수가 그렇다. 명예보유자에게는 기·예능 보유자에 준하는 전승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

2. 2019년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분석

<표 3>³⁾

(2019년 10월 현재)

구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인정구분	성명	비고
민간 신앙 / 의례 (단체)	제2호	영감놀이	전수조교 (보유자)	오춘옥	2019.10. 2대 보유자 인정예고 이중춘씨 2011년 별세 1971.8.26. 지정
	제13호	제주큰굿	전수조교	서순실	이중춘씨 2011년 별세 2001.8.16. 지정
	제5호	송당마을제	보유단체	송당리	1986.4.10. 지정
	제6호	납읍리마을제	보유단체	납읍리	1986.4.10. 지정
	제15호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2002.5.8. 지정
기능 (단체)	제14호	제주도옹기장	보유자	이운옥 김정근 부창래 고달순	명예보유자 신창현 2001.8. 제주도 허벅장 지정. 2011년 제주도옹기장으로 종목명 변경하여 재지정.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보유단체	성읍리	성읍리 민속보존회 2008.4.18. 지정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	전수 장학생	이창욱 김통석	명예보유자 윤문수 2008.12.2. 지정
예능 (민요)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	강등자 김영자	2005.4.13. 지정

3) 필자 작성.

(단체)	제9호	방앗돌굴리는노래	보유자	김영남	2008.12.2. 지정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전수조교	한성복	김경성씨 2009년 별세 1986.4.10. 지정
	제16호	제주농요	전수조교	김향옥	2002.5.8. 지정
	제17호	진사대소리	보유자	진선희	2005.10.15. 지정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보유단체	하귀2리	하귀2리 민속보존회 2007.2.28. 지정
	제20호	제주시창민요	보유자	김주산	2009.7.29. 지정
	제21호	삼달리어업요	보유자	강성태	2013.10.17. 지정
	제22호	제주도 영장소리	제22-1 행상소리	보유자	송순원 (성읍)
제22-2 진토긋 파는소리			보유자	김수길 (종달)	2017.8.24. 신규 지정
기능 (개별)	제3호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전수조교 (보유자)	강경순	2019.10. 2대 보유자 인정예고 명예보유자 김을정 1990.5.30. 지정
	제11호	성읍민속마을고소리술	전수조교	김희숙	명예보유자 김을정 1995.4.20. 지정
	제8호	정동별립장	보유자	홍달표	1986.4.10. 지정
	제12호	고분양태	보유자	고양진	2019.4. 2대 보유자 지정 1998.4.8. 지정
	제23호	구덕장	보유자	김희창	2019.4.15. 신규지정

1) 앞에서 보았듯이 2015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무형문화재 종목과 범주는 매우 광범위해졌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도 무형문화재 22개 종목은 <표 3>과 같이 거의 <기·예능> 범주에서 분류해도 이의가 없을 것들이다. 사실 <표 3>에서 ‘민간신앙/의례’로 필자가 분류한 5개 종목도 지정 당시는 유사 <예능> 종목에 해당될 정도였다.

예를 들어 1971년 초창기에 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영감놀이>의 경우는 제주도 굿판 속 ‘굿놀이’이면서 굿 과정의 일부인데, 지정 당시 이를 <민간신앙> 영역과 별개의 <예능> 범주로 따로 떼서 지정하였다. 그만큼 도지정 무형문화재 22개 종목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초창기 「문화재보호법」의 <기·예능> 범주의 무형문화재로 본래의 의미가 축소되었거나 와전되기도 했다.

한편, 지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주체를 공식적으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때는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 즉 <기·예능보유자>의 줄임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과거 무형문화재 지정은 <기·예능>관련 민속문화분야 연구가들의 영향

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 2) 향후, 2015년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 <기·예능> 범주를 넘어선 신규 제주도 문화재를 적극 발굴,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전문적 해석과 판단, 심의·지정의 원칙 등은 매우 중요하다.

- 3) 종목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지정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표 3> 구분란 두 번째 항목인 ‘기능(단체)’를 보자. 옹기장, 초가장, 불미공예 모두는 단체종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정구분’이 다 제각각이다. 옹기장은 현재 4명의 공동 보유자, 초가장은 마을보존회, 불미공예는 보유자 1인 체제인데 보유자가 고령이 되어 명예보유자가 되자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전수장학생이 갑자기 전수활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렇다고 전수교육조교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장학생이 여러 명이면 전수조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단체종목을 개인 보유자로 지정했을 때의 혼란과 폐해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지정방식의 원칙과 세워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 이를 의식하지 않고 <보유자> 위주로 지정한 단체종목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전승활동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운영 주체 관한 연구’도 향후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4) 2019년 10월 현재,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2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에 보유자가 없다. 그나마 최근에 제2호 <영감놀이>와 제3호 <오메기술> 2대 보유자가 지정 예고 된 상태다. 이것이 통과되면 보유자 부재 종목이 5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메기술> 보유자였던 김을정씨는 고령으로 명예보유자로 자리를 옮겼고, <영감놀이> 보유자 자리는 2011년 별세한 이중춘 심방 이후 8년째 공석이었다. 두 종목 모두 2대 보유자 배출까지 수년 걸렸다.

- 5) 한편, 제13호 <제주큰굿>의 경우는 제주큰굿보존회장 서순실 심방이 유력한 보유자로 최근 수년 거론되면서도 여전히 그는 ‘전수교육조교’에 머물러있다. 서심방 또한 2011년 별세한 이중춘 심방의 후계자로 8년째 공석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2015년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면서, 그의 도지정 보유자 지정이 미뤄졌거나 문화재심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거기다 최근에 문화재청 검토 결과 ‘보류’로 판정되면서 도지정 보유자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2019년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사업시행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표 4>4)

(매월1회 / 천원)

구분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명예보유자
도지정	1,000 * 2018년 800	1,200 * 2018년 1,000	400	200	2종목 1,000 1종목 800
	(13명)	(2단체)	(16명)	(33명)	(4명)
국가 (문화재청)	1,350	보유자 있는 단체 3,500 보유자 없는 단체 5,500	680	263	1,000
전국평균 (2018)	1,054	816	482	168	920

- 1) 전승지원금이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종목을 전수자들에게 교육하고 이를 함께 전승하라는 차원에서 행정의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2) 특히,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가는 지원금이 작년에 이어 20만원 상향조정되었다.
- 3) 전승지원금을 ‘생계보조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명예보유자 지원금까지 넓게 보면 이는 거의 종신훈 연금이다. 전승지원금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종목 중심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지급만료, 지급정지, 유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지방 사례조사, 정기적인 실태조사,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4. 무형문화재 재료구입비 지원(2019년 현재)

※ 사업시행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4)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제공.

- 1) 사업목적 : 사회환경 변화로 재료 및 공개 소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에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 2) 사업내용 : 공예 재료 및 도구,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시 필요한 소품 구입 지원
- 3)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개시연 관련해서도 탐라문화제나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 <옹기장>, <초가장>, <불미공예>, <제주큰굿>과 같은 종목은 지정된 행사장에서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 없을뿐더러,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장소 물색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상응하는 재료비·행사비도 지원되어야 한다. 매해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가령 3년에 1회 지정하여 제대로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도 추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 사업시행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1) 사업목적: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그 원형을 보존하고, 기록된 영상물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교육자료로 활용. 보유자의 말과 행위로 그 기능과 예능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징상 원형 훼손 및 변질되기 쉬워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전을 위해 필수.
- 2) 도무형문화재 22종목 중 19종목 영상기록화 현황(2003~2018년)

<표 5>5)

주 관 처	종 목 명(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노래·방앗돌굴리는노래·멸치후리는노래·제주농요(2003) 송당리·납읍리마을제(2005), 제주도허벅장(2006), 정동벌립(200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제주영상위원회	오메기술·고소리술(2008), 불미공예(2009), 성읍리초가장(2010), 고분양태·영감놀이(2011), 제주불교의식(2015), 제주시창민요 (2016), 진사대소리(2017), 삼달리어업요(2018)
제주KBS	제주큰굿(2012)

3) 도 추진 2019년도 영상기록화 사업현황

- (1)사업내용 : 구덕장 재현 영상 촬영 및 기록물 제작 등
- (2)사업기간 : 2019년 8월 ~ 12월

5)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제공.

- (3)대행기관 : (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훈)
- (4)추진상황 : 구덕장 보유자 김희창 전승활동 촬영(2019년 9월~현재)
- (5)향후계획 : 영상기록화 결과물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EBS 다큐 방영, 유튜브 채널 개설 등)

4) 도 추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에 대한 소견

- (1) 제주도는 2003년~2018년까지 도무형문화재 22종목 중 15년간 19 종목을 영상기록화하였다. 1년에 한 종목 꼴로 촬영한 셈이다. 올해는 최근에 지정된 ‘구덕장’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 1종목/1년/1번 속도이다 보니 15년 전 처음 영상화 한 것과 최근 영상화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괴리감과 환경변화가 매우 클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자료적 측면에서 보면 동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영상기록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영상기록화는 결코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혁신으로 말미암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교체도 요구된다. 보존방식 및 재생환경, 전파방법도 다를 것이다.
- (3) 촬영자 및 촬영요건에 따라 촬영기법, 시놉시스, 표현방법, 러닝타임 등 다양하다. 무형문화재는 원형보존 영상기록화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워크숍이나 영상 세미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영상기록화는 아카이빙이다. 아카이빙은 공공자원이다. (가칭)제주도무형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관 구축을 위한 공식 논의도 필요하다.

6. 제주도 무형문화재전수관 현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2) 2019년 현재 제주도에에는 공공 차원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5곳, 마을회 또는 보존회 차원의 전수관이 대표적으로 3곳 있다. 공공 차원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5곳 중,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과 성읍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은 도가 직접 운영하고, 갯, 불교의식, 칠머리당 영등굿과 같은 단일 종목 전수관은 위탁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과 성읍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의 경우, 국가·도 지정 구분 없이, 연관성 없는 종목들이 함께 입주하여 전수관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종목 전수를 위한 전수교육과 공개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해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 3) 그런데 차별성 없는 전수관 제공 서비스가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성읍리 초가장의 경우,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산하 보유단체(4인)로 인정받았고, 전수관도 배정받았다. 그런데 해당 종목 보유자에 따르면, 그들의 현장은 집을 짓고, 돌을 쌓고, 지붕잇기를 하는 현장이지 위와 같은 실내 전수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배정받은 전수관은 보존회에서 초가장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다. 그만큼 전수관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이다.

<표 6>6)

전수관명	운영형태(수탁자)	입주종목	비고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직영 (세계유산정책과)	· 국가 : 갯일(총모자), 망건장, 탕건장 · 도 : 제주농요, 제주시창민요, 제주큰굿, 영감놀이	착공: 02. 3월 준공: 03. 4월
갯전시관	민간위탁 (보유자 장순자)	· 국가 : 갯일(양태)	착공: 08. 1월 준공: 08. 10월
제주불교의식전수관	민간위탁 (보유자 문명구)	· 도 : 제주불교의식	착공: 08. 3월 준공: 08. 12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민간위탁 (보유단체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국가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착공: 13. 11월 준공: 16. 3월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직영 (문화유적관리과 성읍민속마을 팀)	· 국가 : 제주민요 · 도 :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고소리술, 성읍리초가장	착공: 09. 12월 준공: 12. 12월
※ 마을 및 보존회 자체 운영			
귀리 길보리 농사일소리 전수회관	마을회	· 도 : 귀리길보리 농사일소리	준공 : 11. 2월 하귀2리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기증해 건립한 소리 전수관.
구억마을 용기전수관		· 도 : 제주용기장	준공: 12. 12월 폐교한 옛 구억분교장 활용.
제주용기박물관	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	· 도 : 제주용기장	무릉2리 고바치노랑굴, 2012년부터 정착.

6)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제공.

4) 반면에 재료가 없거나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연습할 공간이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도 있다. 제8호 정동벌립장은 재료인 ‘정동’이 거의 멸종해 재배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며, 덕수리불미공예는 하루 바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지정 여부 등 전승체계가 논의 되어야 전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7호 진사대소리는 연습실이 없어서 보유자의 자택에서 연습하는 등 대부분 종목은 다양한 이유로 전수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5) 한편, 마을회 또는 보존회 자체 운영 전수관의 경우도 문제를 야기했다. 구억마을 용기전수관(마을회)과 제주용기박물관(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 두 전수관 모두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용기장’을 매개로 하고 있다. 현재 제14호 ‘제주용기장’ 보유자는 4명(질대장: 이윤옥, 도공장: 부창래, 불대장:고달순, 굴대장:김정근)이다. 그 중 굴대장 김정근씨는 구억마을 용기전수관을 중심으로 전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 3인은 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대표: 허은숙, 2008년 설립) 소속으로 무릉2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용기굴제’도 연다. 최근에도 제11회 용기굴제를 열었다.

사실, 2012년 당시 1대 용기장들과 보존회는 당시 폐교된 구억분교 자리를 활용해서 구억 마을회와 함께 전수활동을 한 적이 있다. 2012년 말에는 제대로 된 ‘구억마을 용기전수관’도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전수관은 사업초기부터 무형문화재인 용기장들이 배제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구억마을 용기전수관’은 애당초 복권기금으로 설립된 것이데,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형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 아닌 마을사업 일환인 용기체험관으로 구상되었던 것이다.(〈미디어제주〉, 2012.09.21.). 이러한 사실이 점점 표면화 되자, 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와 구억마을 간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보존회는 무릉2리 고바치 노랑굴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보존회가 쓰는 고바치 노랑굴 부지는 제1대 굴대장이던 고신길(본명 고흥수)씨가 돌아가시면서 제주용기 발전을 위해 내놓은 땅이다. 이곳엔 무형문화재 용기장들이 직접 만든 제주전통 검은굴과 노랑굴이 있다. 매년 1년 1회 보존회 주관으로 열리는 ‘용기굴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형문화재 제주용기 전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의 용기박물관은 철저히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 개념도 야외 용기 가마터 위주로 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한편, ‘구억마을 용기전수관’은 전수관 대로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6) 종합하면, 실내·외 불문하고 전수교육관을 마련하려면, 종목의 성격에 맞아야 하고,

설계에도 해당 종목 보유자 및 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글을 마치며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다. 본고에서는 문화재관련 법률과 제주도 무형문화재의 현황 중 일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완성본이 아니라 중간보고 수준이다. 마무리 차원에서 III부를 계획했다가 신지 못했다. “전승·운영 주체 관점에서 본 제주도 무형문화재의 전망”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한 접근이다. 이 부분은 향후 선 보이기로 한다.



제11회 제주옹기골제, 제주도옹기장 3분과 곶할망제 장면(무릉2리 노랑굴, 2019년10월26일 © 필자)